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9. 15 선고 2020가단128159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정

피고B주택조합 추진위원회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9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7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정상규

별지